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는 근로자 건강진단

1. 실시근거 및 목적

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107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보건분야 기술자료 연구원 2009-1-1) 근로자 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52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실 시 목 적	종류
1. 근로자의 주기적인 건강보호 및 유지	일반건강진단
2. 유해인자(177종)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획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	배치전건강진단
3. 유해인자(177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특수건강진단
4. 유해인자(177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기타 건강장애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재평가	수시건강진단
5. 직업병 집단 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유지	임시건강진단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만, 사업주가 지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개요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규칙 제98조의 2제 1항)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함 (규칙 제98조의 2제2항)

3. 일반건강진단

가. 정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규칙 제98조 제1호)

나. 대상 및 실시시기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사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칙 제99조 제1항)

※ 실시시기의 명시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규칙 제99조의 4)

다. 실시기관,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준수사항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
검사항목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GOT 및 GPT, GPT 및 총 콜레스테롤
실시방법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

라. 실시면제

- (1)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인정(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
 -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②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 ③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⑤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사
- ⑥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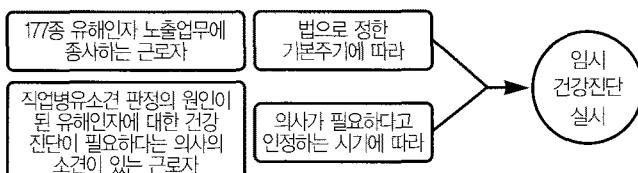
4. 특수건강진단

가. 정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규칙 제98조제 2호)
- (1) 규칙 별표 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2)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나. 대상 및 실시시기



고위험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회에 한하여 일시(½) 단축

(1)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12의2)노출업무 종사 근로자 ⇒ 규칙 별표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 (규칙 제99조 제2항)
※(규칙 제99조 제2항)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12의 2)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건강진단 시기 부터의 실시주기
1군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팅포름아미드 (DMF)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시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 시기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개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기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 (2)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규칙 제99조제3항)
- (3) 고위험 근로자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

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다. 실시기관,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준수사항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사항목	1차 검사항목	2차검사항목
실시방법	1차 검사항목은 대상자 전체에 대해 실시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한 자 또는 질병 의심자에게 실시

라. 실시 면제

(1)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인정(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①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④ 그 밖에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2) 같은 검사항목의 생략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규칙 제99조제6항)

(3) 수시건강진단 실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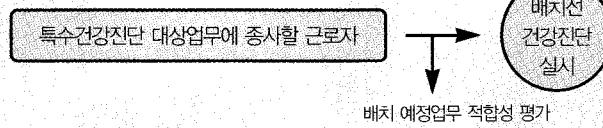
다만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함(실시기준 제9조의2 제3항)

5. 배치전 건강진단

가. 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규칙 제98조 제3호)

나. 대상 및 실시시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함(규칙 제99조 제4항)

다. 실시기관 검사항목

- (1)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규칙 제98조의3 제1항)
- (2) 검사항목 :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규칙 별표13과 같음(규칙 제100조 제4항)

라. 실시면제



- - 다른 사업장에서 관련 건강진단을 받은지 6개월 이내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사본 제출
 -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건강진단을 받은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제99조 제4항 단서)

- ①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②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 같은 검사항목의 생략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규칙 제99조 제6항)

6. 수시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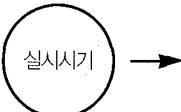
가. 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밖에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규칙 제98조 제4호)

나. 대상 및 실시시기

-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중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 근로자

→
신속한
건강관리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 직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다. 실시면제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

※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 또는 요청 받았으나,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실시기준 제9조의2제1항 단서)

수시건강진단 실시후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면제

수시건강진단 실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함(실시기준 제9조의2 제3항)

7. 임시건강진단

가. 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규칙 제98조 제5호)

-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례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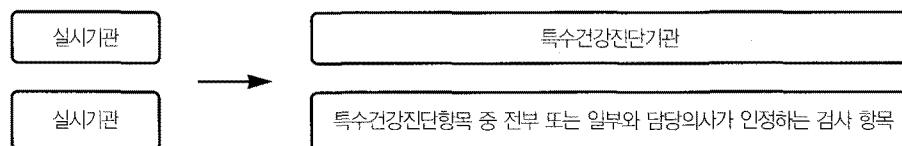
나. 대상 및 실시시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3조 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규칙 제98조 제5호)

-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의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실시기관 및 검사항목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를 보유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 검사항목 : 규칙 별표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규칙 제100조제7항)

8. 산업의학적 평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실시기준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함(실시기준 제18조)

산업의학적 평가는 건강관리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평가, 사후관리 등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무수행적합여부평가는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실무지침) ☺

